

2026년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접수 공고

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1일

파 주 시 장

1. 공 고 명: 2026년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

2. 공고내용

- 신청기간: 2026. 9. 14. ~ 10. 23.
- 지급대상: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,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일반농어민, 청년농어민, 귀농어민, 환경농어민(친환경, 동물복지축산농장, 가축행복농장, 명품수산물)
 - 50세 미만의 농어민
 -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어한지 5년이내의 농어민
 -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
 - 일반 농어민
- 지원내용
 -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원 또는 월 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
 - 일반농어민: 월 5만원(연 60만원)
 - 청년농어민, 귀농귀어민, 친환경농어민 등: 월 15만원 또는 5만원(연 최대 120만원)
: 상반기분(1~6월): 월 15만원 / 하반기분(7~12월): 월 5만원
- 지급조건: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,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
 - 거주기간: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
 - 영농영어기간: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
 - 농어업외 소득 3,700만원 미만(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)인 자
 - ※ 귀농어민은 거주기간, 영농영어기간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
 - 이 외 지침 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

○ 제출서류

- (필수)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, 신분증
- (필요시) 지역화폐카드, 농업(임업어업)경영체 등록확인서, 친환경인증 증빙서류 등

○ 신청방법: 거주지 기준

- 방문접수: 읍면)행정복지센터 산업팀, 동지역)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- 온라인접수: 통합지원시스템(<https://farmbincome.gg.go.kr>)

3. 제외대상자

-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
-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·출하·가공·수출·유통·판매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자
- 의무군복무자, 초·중고생, 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자
(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를 포함하되, 전문의가 발급한 ‘활동 가능 진단서’를 제출한 경우 및 현장조사 결과 영농·영어 활동이 가능한 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)
- 공익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

< 주의사항 >

-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(지급 중지 포함) 및 3~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,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.
- 사용기한은 아래와 같으며,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환수됩니다.
 - 1차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,
 - 2차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(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, 재지급은 불가합니다.)
- 지급요건(거주, 영농, 연령, 농외소득, 사회적가치창출, 친환경인증, 동물복지, 명품수산물 인증, 부정수급자 제외, 중복지급 불가 등)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,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(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, 이미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.).
-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,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(☎031-940-2931, 2932, 2933)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